Tel: (02) 590-0900 Fax: (02)3477-0957

		위	임	장		
수 임 인 (대 리 인)						
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대한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.						
		다	ī	0		
금 액: 채 권 자: 채 무 자:			원 정 채무빌	(₩ :생일 :)
변제기일 : 변제방법 :				!증인 :		
이 자: % 지연손해금: % 1. 위 금원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기재 2.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허락함						
3. 연대보증인의 4. 연대보징인의			;	까지로 한다.	원(이다.
					년	월 일
위 임 인	성 명 : 주 소 :					인감
위 임 인	성 명 : 주 소 :					인감
위 임 인	성 명 : 주 소 :					인감
위 임 인	성 명 : 주 소 :					인감